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661호 2018. 9. 5.(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05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064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회 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5.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35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96-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80	2009-04-01	2018-08-28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74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고비길 482-50	2009-04-01	2018-09-05	학이 높이 날면서 놀았다하여 이름 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22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2길 53	2009-04-01	2018-09-05	동변길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51-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목계길 42-1	2009-04-01	2018-09-05	목계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산41-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사길 63-107	2009-04-01	2018-09-05	전통사찰인 송계가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6-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137	2009-04-01	2018-09-05	중앙로를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4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지동길 45	2009-04-01	2018-09-05	마을에 못을 파서 소에게 마시게하였다고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4-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35	2016-04-20	2018-09-05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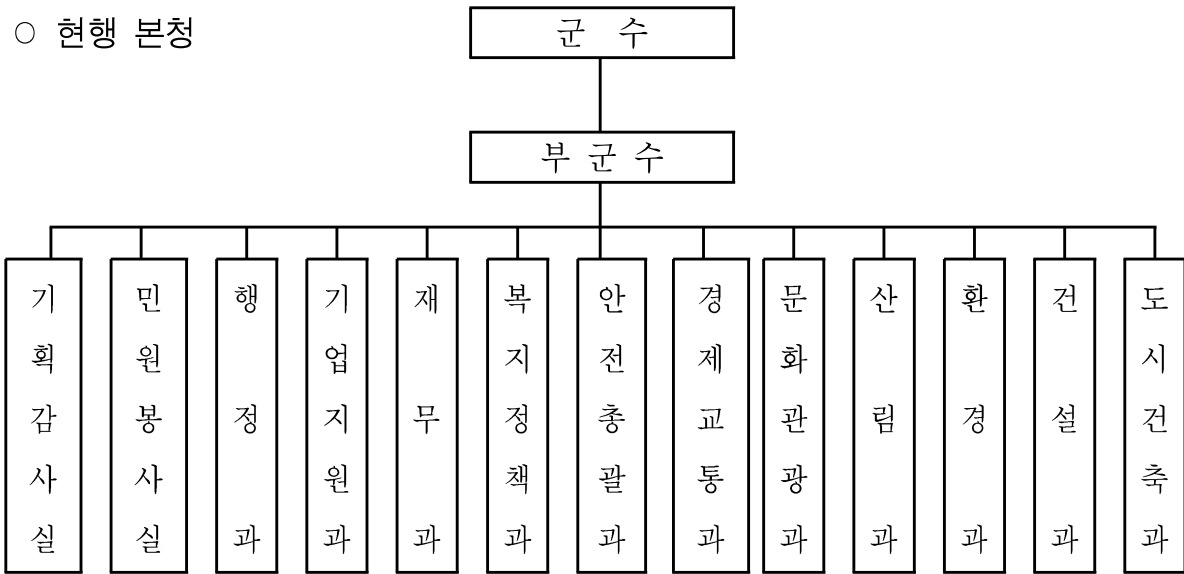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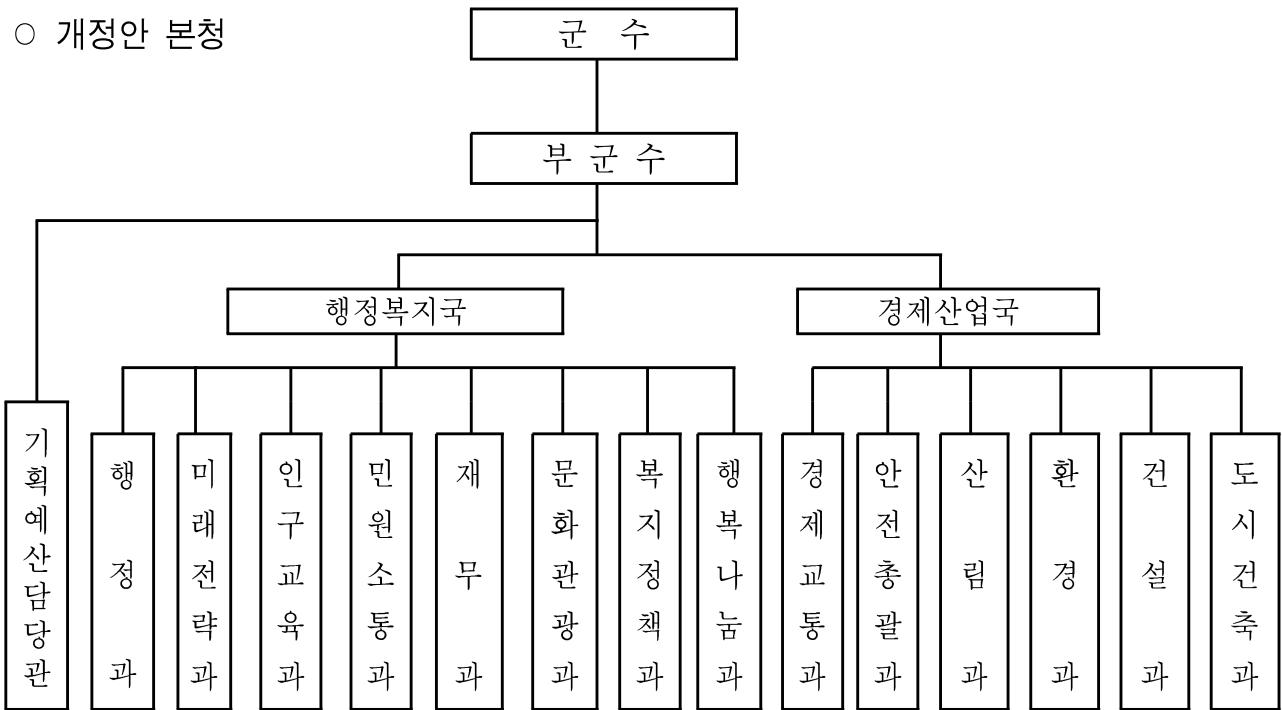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局)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국(局)을 설치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 나. 지역현안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담당관 설치 및 과(課) 조정
  - 다. 기구 조정
    - 1) 당초 : 2실·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 2) 조정 :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 현행 본청



○ 개정안 본청



라. 정원의 총수 조정

- 1) 정원의 총수 : 679명 ⇒ 702명(증 23)
- 2) 집행기관 정원 : 665명 ⇒ 688명(증 23)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5급 정원 : 35명 ⇒ 38명(증 3)

가) 현행 : 35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명)

나) 조정 : 38명(본청15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명)

2)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608명 ⇒ 628명(증 20)

가) 현행 :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4. 소요예산 : '18년도 예산 169백만원 확보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ksh82@korea.kr](mailto:ksh82@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0조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본청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 설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인사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군 현안·역점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전략·기업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 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축제, 관광 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7. 복지정책 종합 계획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 아동, 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 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 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사업 및 건축행정, 건축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③ 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부자농촌과를 둔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농업 6차 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로컬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4장 사업소

### 제1절 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수도사업소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2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사업소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7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 및 활성화
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사건사업소 위치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장 읍·면

**제22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소관사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고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688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인

구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⑪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⑫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⑬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⑯ 거창군 아람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⑰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⑱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촌진흥과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부자농촌과장,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

㉒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4호 중 “민원봉사실”을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㉓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㉔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㉕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㉖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㉗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주상면 일원
옹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옹양면 원촌4길 14-9	옹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6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13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5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5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27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4길 19-27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9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26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37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4-11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옹양면 강천장교길 19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하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옹양면 하곡1길 3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봉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33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804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1205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439-14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동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881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4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41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5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1길 20	춘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735-15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20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증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4	원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39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717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54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퍼센트 이상	0	1퍼센트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내	28퍼센트 이내	31퍼센트 이내	26퍼센트 이내	7퍼센트 이상

○ 비교: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퍼센트 이내	9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내	92퍼센트 이상

○ 비교: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9급 상 당
비율		100퍼센트 이내			

○ 비교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02 679	322 286	14	134 134	67 70	67 64	41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70 647	318 282	14	107 107	40 43	67 64	40 53	40	151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8 35	15 11	3	5	4	1	3 4	1	11
	6급 이하	628 608	300 268	11	101 101	36 39	65 62	37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5조(정원의 총수)

###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소계(a)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세입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169	1,012	1,032	1,052	1,073	4,338

### 3. 관련 의견

- 국가시책 및 주민밀착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 증원 내역 : 23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 1,012백만원
  - 기본급 920백만원, 수당 등 92백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신영수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